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85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다른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게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11조)

- 1)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 2)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3)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4조)

- 1)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 2) 의원은 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련규정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원이**”를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로,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의장**”앞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를 삽입한다.

제6조 중 “**임용·승진·전보**”를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무중**”을 “**직무수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의장이 허용하는 금품 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에

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사전**”앞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그**”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

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칙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중 “의장에게 서면으로”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다음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삽입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를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경조사의 통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중 “소속 사무처”를 “의회사무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장”앞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를 삽입하고, “신고 할”을 “신고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확인하면”을 “확인한 경우에는”으로, “받아”를 “제출받아”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

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의**”를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

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원장”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명”을 “미리 지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자문위원회의”를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사안에 관하여”를 “해당 사안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2호”를 “제7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관하여”를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 “관여 하였던”을 “관여하였던”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를 “위원은”으로, “직접적”을 “위원 자신과 직접적”으로, “수행할”을 “업무를 수행할”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를 “자문위원회 회의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자문위원회의”를 “자문위원회”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28조 중 “자문”을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을 “의장은”으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을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제32조 중 “이 장에”앞에 “의장은”을 삽입하고, “외에”를 “이외에”로 하며, “의장이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조사·처리에 관한”을 “조사·처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를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 의안심사 [] 예산심의 [] 행정감사조사등 [] 기타 [] 회의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정당)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장소			
내용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u>의원</u> 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u>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이 -- <u>정하는 것</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u>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아닌(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 (생략)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u>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u>	제2조(정의) ----- -----. 1. ----- <u>의원</u> ----- ----- ----- ----- ----- ----- -----. 가.~ 다. (현행과 같음) 2. “ <u>금품등</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u>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u>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에게 적용
한다.

② (생략)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
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
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
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
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
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
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
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
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
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
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삭 제>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

----.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

--.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직무수행 중 -----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

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등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
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
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
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
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
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
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
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신 설>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의장이 허용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

<신 설>

<신 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삭제)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
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
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

-----.

② ----- 따른

-----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 홍보 ·
토론회 · 세미나 ·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

<신 설>

<신 설>

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금융회사등-----
-----.

② -----

-----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
-----.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의 수수 제한 등) <신 설>

① (생 략)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
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
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
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
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
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삭 제>

제18조(성희롱 금지) -----

----- 의회사무처 -----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 -- 신고할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확인한
경우에는 -----
제출받아-----

-----.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신 설>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
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
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
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
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
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
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
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
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
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
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
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
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행동
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
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
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
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
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
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④ ⑤ (생략)

제2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4. -- 조례 -----

5. ----- 조례의 -----

제22조(구성 및 임기) <삭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
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
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
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
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
야 한다.

④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다)-----.

② -----

----- 미리 지명-----
-----.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자문위원회
-----.

1. -----
----- 해당 사안의 --

 2. -----
----- 제7조제2호-----

 3. -----대한

 4. ----- 대한

----- 관여하였던 --
 5. (생략)
- ② 위원은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 위원 자신과 직접적-
----- 업무를 수행할

-- 자문위원회 회의를 -----
-----.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

아니하다.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
자문위원회 -----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자문료 지급) <u>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u>외에</u>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u>의장이 정한다.</u>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u>조사·처리에 관한</u>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u>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u>	-----. 제31조(자문료 지급) <u>의장은</u> ----- ----- ---- <u>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u> ----- -----. 제32조(운영세칙) <u>의장은</u> ----- ----- <u>이외에</u> ----- ----- ----- -- <u>정할 수 있다.</u>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 ----- ----- <u>조사·처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u> --. ② ----- ----- <u>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
--	--

관련 규정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규정 정비 대상	해 당 없 음
관련 자료	해 당 없 음

관련규정 발췌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제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